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업무 협의 부적정

소 관 기 관 국가기술표준원

조 치 기 관 국가기술표준원

내 용

1.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제품을 우수재활용(Good Recycled)제품(이하 “GR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정·공고하고 GR제품 인증서¹⁾를 발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구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2012. 11.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GR제품의 품질표준(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구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5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GR제품에 대한 품질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GR규격제정위원회²⁾로 하여금 품질표준(안)을 작성하게 한 후, GR인증심의위원회³⁾

1) 발급된 인증서를 근거로 제품 제조사는 인증제품 등에 GR제품 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2) GR제품의 인증을 위한 GR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개정하는 위원회로 국가기술표준원 대상제품 한국산

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요령 제14조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GR제품 인증을 할 때에는 GR인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GR제품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게 한 후, GR제품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2016. 7. 21.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관련 [별표 5의2] 제22호 가목 및 다목에는 하수·폐수처리 오니(汚泥)⁴⁾를 고화⁵⁾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제품은 보도블록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별표 5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⁶⁾.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재활용제품에 대한 GR제품 품질표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용도 외로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내용의 품질표준을 제정하여 GR제품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11. 8. 2. 유한회사 ○○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업규격 담당자,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등 중에서 10인 이내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여 구성·운영됨(구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8조 및 제9조 등)

3)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당 GR제품 품질표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GR인증을 하는 위원회로 구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등 중에서 20인 이내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여 구성·운영됨(구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4조, 제5조 등)

4) 오니는 하수·폐수처리 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 응집침전, 탈수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분과 고형물로 이루어진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유기성 오니라 함

5) 고체형태로 고정시키는 물질과 혼합하여 유해물질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킴

6) 현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 중 고화 처리물(51-09-03)은 종이 및 금속 등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R-3-4),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3)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제품은 석산에 채움재(R-7-4)로 재활용할 수 없음

처리한 재활용제품을 폐석산(채석이 종료된 석산) 복구용으로 사용하겠다고 GR제품 인증을 위한 품질표준 제정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제품은 폐석산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GR규격제정 위원회는 2011. 12. 13.부터 2012. 10. 26.까지 다섯차례⁷⁾ 회의를 개최하여 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2호 다목에서 허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 관련 매립시설 복토재 기준을 폐석산 복구 시에도 적용되도록⁸⁾ 품질표준(안)을 작성하였고, 2012. 11. 13. GR인증심의위원회가 위 품질표준(안)이 적절하다고 심의 의결하자 국가기술표준원은 같은 날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의 GR제품 품질표준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은 2012. 12. 14. 유한회사 ○○이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의 GR제품 인증을 신청하자 2013. 2. 5. GR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제품에 대한 GR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더욱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과정에서 2012. 10. 15. 및 11. 13. 환경부가 두 차례에 걸쳐 위 재활용제품에 대해 환경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오염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높다고 품질표준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유기성 오니의 해양 투기가 점진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다양한 육상처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품질표준을 제정하고, GR제품 인증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폐

7) 2011. 12. 13., 2012. 3. 8., 2012. 5. 31., 2012. 9. 17., 2012. 10. 26.

8) 2011. 12. 13. 개최된 GR규격제정위원회 회의결과이며, 최종적으로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제품 품질표준 관련 해설서에 반영

석산 복구용으로 하수·폐수처리 오니를 고화 처리한 재활용제품에 대해 GR제품 인증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⁹⁾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2020. 3. 6.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부합하지 않고, 환경부가 GR규격제정위원회 및 GR인증심의위원회 당시 품질표준안 제정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품질표준을 폐지하였다.

다만, 감사과정 중 국가기술표준원은 GR규격제정위원회가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품질표준안을 제정한 후, GR인증심의위원회가 「폐기물관리법」 등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최종 의결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간사 역할만 담당하여 품질표준안 검토 및 심의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GR규격제정위원회가 품질표준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 의견을 반대 의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GR제품 품질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공고하여 인증하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품질표준을 검토·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용도 외로 재활용한 제품을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인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9) 유한회사 ○○에서 생산한 ‘폐석품 복구용 고화물’ 제품이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토석 채취 이후 훼손된 산림 지역 복구용 복토재로 사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유해물질이 분출되었고, 관리청인 완주군은 2019. 7. 24. 위 업체를 고발한 바 있음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